

●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-155호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,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여, 채권압류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9월 22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

1. 제 목: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나. 국세징수법 제10조(독촉) 및 제3장 강제징수
- 다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- 라.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5.9.22.~10.6.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(단위: 원)

체 납 자		압 류 내 역		
성 명	주 소	압류재산	징수과목명	압류금액
신용*	전남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**	예금채권	국유재산사용료	14,580,610

5. 체납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, 미납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 압류조서 등본,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